

## 제18장 제도 규정

### 제18.1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 회의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장관들(이하 이 장에서 “장관들”이라 한다)은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회합한다.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들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

### 제18.2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설치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지정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18.3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기능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 나.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한다.
  - 다.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논의하고, 적절하

고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이 협정 규정의 해석을 발표한다.

라. 그 기능 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

마. 제18.6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부속기구)에 따라 설치된 부속기구(이하 이 장에서 “부속기구”라 한다)에 사안을 회부하거나 업무를 부여하거나 기능을 위임한다.

바. 모든 부속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사. 부속기구에 의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아. 필요한 경우, 부속기구를 재구성하거나 재조직하거나 해산한다.

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및 그 부속기구에 사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후 이를 감독한다.

차. 적절한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주제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학계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는 대화 포럼을 개최한다. 그리고

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들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경우,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들에게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 제18.4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sup>1</sup>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그 첫 번째 회의에서 그 절차규칙을 수립한다.

## 제18.5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회의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그리고 첫 번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 회의 전에 회합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후 매년 회합한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아세안 회원국인 당사자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당사자에서 교대로 그리고 순번제로 소집된다.
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아세안 회원국인 당사자들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당사자들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가 순번제로 공동의장을 맡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의 역할은 당사자들 간 컨센서스의 촉진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공평한 회의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대표단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전자우편,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

<sup>1</sup> 결정을 내릴 때 회의에 참석한 어떠한 당사자도 제안된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가 그 결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결정은 그 당사자에 회람되고, 그 당사자는 그 결정의 회람부터 14 일 내에 확인을 전달할 수 있다.

## 제18.6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부속기구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그 첫 번째 회의에서 다음을 설치한다.
  - 가.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무역 구제 업무를 다루는 상품위원회
  - 나.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 무역, 자연인의 일시 이동, 그리고 투자 업무를 다루는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
  - 다.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그리고 새로운 현안에 대한 업무를 다루는 지속가능성장위원회, 그리고
  - 라.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그리고 정부조달에 대한 업무를 다루는 기업환경위원회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는 부속서 18-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구의 기능)에서 그 위원회를 위하여 규정된 기능 및 이 협정에서 그 위원회를 위하여 규정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갖는다.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밖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부속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후 매년 회합한다.

## 제18.7조

### 부속기구의 회의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기구는

가. 각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아세안 회원국인 당사자들이 임명한 대표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당사자들이 임명한 대표가 순번제로 공동의장을 맡는다.

다. 그 기능 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sup>2</sup>

라. 적절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전자우편,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지시로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 제18.8조

### 접촉선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내에,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체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그 접촉선의 상세 연락처를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상세 연락처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신속히 통보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

<sup>2</sup> 결정을 내릴 때 회의에 참석한 어떠한 당사자도 제안된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부속기구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가 그 결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결정은 그 당사자에 회람되고, 그 당사자는 그 결정의 회람부터 14 일 내에 확인을 전달할 수 있다.